주간 관세무역정보 vol.2191 2026.8.17.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품목분류, 생산단계·물품 특성이 좌우한다

## 관세청, 202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이주의 초점]**
선박 부품 주형은 '잉곳 제조용', 열처리 섬유는 '기타 합성섬유'로 분류 (4p)

**[전문가 칼럼]**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제도, 언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11p)

**[위클리뉴스]**
미국, 드론·부품에 최대 100% 품복별 관세… 한국산은 15% 상한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2028년 본격 시행 (7p)

**[판례 동향]**
「관세법」상 구매수수료 관련 판례 분석 (21p)

**[품목분류 동향]**
피부질환 등에 쓰이는 광선 치료 기기의 품목분류 (30p)

**[일본 관세 리포트]**
일본, 보세구역 신산업·지역경제 인프라로 활용 (41p)




※ AI 생성 이미지


| | |
|---|---|
| 발 행 인 | 백형민 |
| 편 집 인 | 남성훈 |
| 총 괄 | 김민정 |
| 취 재 | 강보람 aorigaski@kctdi.or.kr<br>김성은 ray1023@kctdi.or.kr<br>김다솔 kds5817@kctdi.or.kr |
| 마 케 팅 | 김진우 kjw@kctdi.or.kr |
| 디 자 인 | 경성문화사 |

| | |
|---|---|
| 발 행 처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 발 행 일 | 2026년 8월 17일(통권 제2191호) |
| I S S N | 2799-7251 |
| e-ISSN | 2799-726X |
| 등록번호 | 서울 다07117(2005.5.20.) |
|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br>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
| 홈페이지 | www.kctdi.or.kr |
| S N S | blog.naver.com/kctdi1964<br>www.instagram.com/kctdi_library |


*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CONTENTS


## 이주의 초점

**04** 품목분류, 생산단계·물품 특성이 좌우한다
관세청, 202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07** **Weekly News**

## 전문가칼럼

**11**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제도, 언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박주현** 법무법인(유) 율촌 대한민국·미국 변호사

## 관세행정실무해설

**18** **질의응답사례**

폴리에스테르 소재 장바구니의 HS Code

## 판례동향

**21** **관세판례해설**

「관세법」상 구매수수료 관련 판례 분석

## 품목분류동향

**30** **품목분류해설**

피부질환 등에 쓰이는 광선 치료 기기의 품목분류

## 일본 관세 리포트

**41** 일본, 보세구역을 신산업·지역경제 인프라로 활용

# 품목분류, 생산단계·물품 특성이 좌우한다
# 관세청, 202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 선박 부품 주형 '잉곳 제조용', 열처리 섬유는 '기타 합성섬유'로 분류

관세청이 선박 부품용 주형과 기능성 섬유 등 산업 현장에서 품목분류가 쉽지 않았던 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기준을 내놨다. 제조공정과 생산단계, 화학적 변성에 따른 성질과 기능 등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됐다. 특히 러더스톡(Rudder Stock) 제조용 주형의 경우 품목분류에 따라 한·중 FTA 0%가 아닌 기본관세 8%가 적용돼 이목을 끈다.

관세청은 지난 7월 2일 개최한 '202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8월 13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전했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다.

### ■ 러더스톡 제조용 주형 '잉곳 제조용 주형'으로 결정

이번 결정에서 눈에 띄는 사례는 선박 조타장치의 핵심 부품인 러더스톡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주형의 품목분류 결정이다. 러더스톡은 선박의 방향을 조종하는 러더(Rudder)에 회전력을 전달하는 축이다.

쟁점은 해당 물품을 '금속 성형용 주형'으로 볼 것인지, '잉곳 제조용 주형'으로 볼 것인지였다. '금속 성형용 주형'인 제8480.49-0000호로 분류하면 한·중 FTA 세율 0%가 적용되지만, '잉곳 제조용 주형'인 제8454.20-0000호로 분류하면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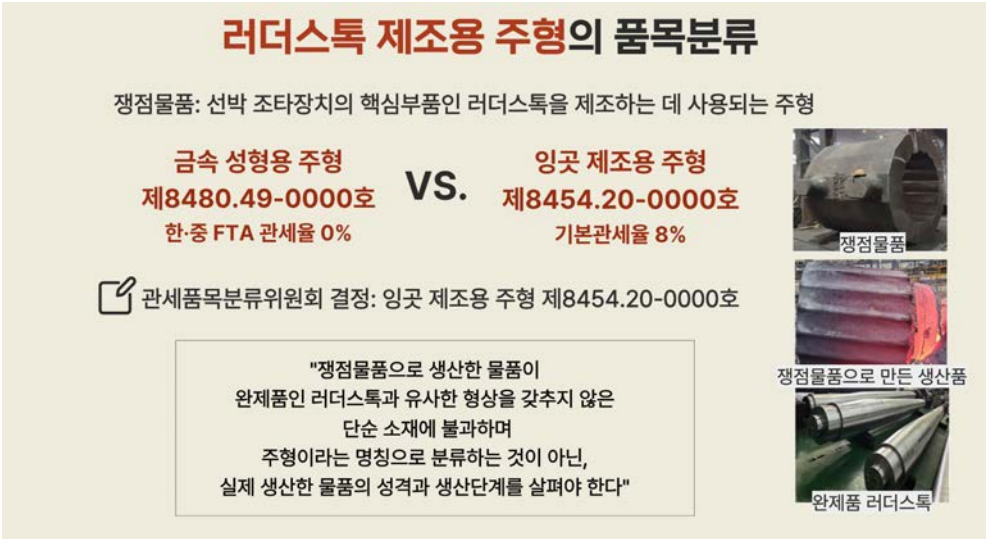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위원회는 해당 물품을 제8454.20-0000호의 '잉곳 제조용 주형'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주형의 명칭보다 해당 주형에서 생산된 물품의 성격과 생산단계를 살폈다. 해당 주형에서 생산된 물품은 프레스를 이용한 단조 공정을 거치면서 길이가 약 2,755㎜에서 최대 1만 3,876㎜까지 크게 늘어난다. 위원회는 주형에서 나온 물품이 완제품인 러더스톡과 유사한 형상을 갖추지 않은 단순 소재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생산 물품을 '잉곳'으로 판단했고 이를 생산하는 쟁점물품 역시 '잉곳 제조용 주형'으로 결정했다.

관세청은 이번 사례에 대해 '주형'이라는 명칭만으로 일반적인 금속용 주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형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성격과 생산단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 열처리로 성질 달라진 기능성 섬유 '기타 합성 스테이플 섬유'로 결정

두 번째 주요 사례는 소방복과 단열재 등에 사용되는 기능성 섬유다. 쟁점물품은 폴리아크릴로니트릴(PAN, Polyacrylonitrile) 기반 아크릴 섬유를 열처리해 만든 스테이플 섬유다. 이를 '아크릴 스테이플 섬유'인 제5503.30-1000호로 볼 것인지, '기타의 합성 스테이플 섬유'인 제5503.90-0000호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두 품목 모두 기본관세율은 8%다.

위원회는 해당 물품을 제5503.90-0000호의 '기타의 합성 스테이플 섬유'로 결정했는데, 열처리 과정에서 섬유의 분자구조가 화학적으로 변성돼 기존 아크릴 섬유의 성질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내열성과 단열성을 갖춘 독립적인 기능성 신소재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했다.




자료: 관세청, 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관세청은 이번 결정이 첨단 기능성 소재의 경우 출발 원료가 무엇인지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화학적 변화와 그 결과 새롭게 갖게 된 성질·기능을 고려해 분류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선박용 주형과 PAN 기반 기능성 섬유를 포함해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관세청이 공개한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 연번 | 대상물품 | 결정 |
|---|---|---|
| 1 | INGOT MOULD(잉곳 주형) | 제8454.20-0000호(기본 8%) |
| 2 | Loma Metal Detector(금속 탐지) | 제8543.70-9020호(기본 8%) |
| 3 | 알루미늄 접합 배관 | 제8415.90-0000호(한·중 FTA 0%) |
| 4 | PAN-based Oxidized Staple Fiber (PAN 기반 스테이플 섬유) | 제5503.90-0000호(기본 8%) |
| 5 | LAMINATED NONWOVEN DISRUPTOR (적층 비직물 파쇄기) | 제5911.40-0000호(기본 8%) |
| 6 | NYLON NIB(나일론 닙) | 제5609.00-3000호(기본 8%) |
| 7 | JOURNAL KIT BEAR`G(저널 키트) | 제8708.99-9000호(기본 8%) |
| 8 | 건조링홍고추후레이크 | 제0904.21-0000호(기본 50%) |
| 9 | 친환경 액상 제설제 | 제3820.00-2000호(WTO 양허 6.5%) |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신산업과 첨단소재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관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기업의 통관 편의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출입자가 품목번호를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는 수출입신고 전에 품목분류에 어려움이 있는 물품의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관세청이 품목번호를 결정해 회신하는 제도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신청할 수 있다.

노지선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성은 기자 |

# 미국, 드론·부품에 최대 100% 품목별 관세··· 한국산은 15% 상한

## 최대이륙중량·열화상 탑재 유무에 따라 차등 관세··· 9월 3일 발효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3일(현지시간) 무인기(드론)와 관련 부품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6일(현지시간) 발표된 폴리실리콘 관세와 마찬가지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상업·군사용 드론의 외국산 핵심 부품 의존으로 공급망과 사이버안보 취약성이 커지고 있으며, 현대전에서 드론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미국 내 생산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포고문에 따르면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거나 열화상 촬영 기능을 탑재한 드론에는 100% 관세가 부과된다. 해당 드론의 도킹스테이션과 일부 핵심 부품에도 100% 관세가 적용된다. 반면 최대이륙중량이 25㎏ 이하이면서 열화상 촬영 기능을 갖추지 않은 드론과 프로펠러·회전날개·착륙장치 등 그 밖의 부품에는 25%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는 별도의 관세 상한이 적용된다. 한국·일본·대만·스위스·리히텐슈타인·EU산 드론과 부품에는 15%, 영국산에는 10% 상한이 적용된다. 다만, 우대관세를 적용받으려면 드론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기술이 정해진 요건에 따라 해당 국가 또는 미국산임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 기업 제품이어도 한국·일본·대만 등 대상국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한 핵심 부품 의존도가 높으면 15% 상한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

| 100% 관세 대상 품목 | 25% 관세 대상 품목 | 관세 상한선 적용 국가 | |
|---|---|---|---|
| | | 10% | 15% |
| 최대이륙중량이 25kg 초과하거나 열화상 촬영 기능을 탑재한 드론<br><br>관련 부품<br>(프로펠러·회전날개·착륙장치 등) |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하이면서 열화상 기능을 갖추지 않은 드론<br><br>관련 부품<br>(프로펠러·회전날개·착륙장치 등) | 영국산 드론과 부품 | 한국·일본·대만·스위스·리히텐슈타인·EU산 드론과 부품 |

자료: 백악관 팩트시트, 정리: 주간 관세무역정보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유도하는 장치도 도입됐다. 미국에서 드론이나 관련 부품 생산시설을 신설·확장하는 기업은 필요한 장비와 제품을 232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관세는 포고문 서명 21일 뒤인 9월 3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 시간)부터 발효되며,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일부 부품에 대한 25% 관세는 180일의 유예기간 후 시행된다. 해당 품목은 미 연방통신위원회가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 파이낸셜타임스 등 해외 매체들은 중국산 드론이 미국 상업용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미국의 이번 관세 조치를 중국산 드론과 핵심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조치로 평가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이보다 앞선 8월 5일 드론 관련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대미 수출통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의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된 드론과 핵심 부품·관련 기술을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건별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허가 간소화 조치를 적용받을 수 없다. | 김성은 기자 |

##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2028년 본격 시행

연간 수입금액이 3,000만달러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이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관세 신고 내용을 확인받으면 수입검사 축소와 가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제도가 도입된다. 관세청은 8월 13일 이와 같이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은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과세가격과 품목분류 등 수입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제도 적용 대상은 연간 수입금액 3,000만달러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이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제외된다. 지정된 기업은 매 과세연도별로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해 과세가격과 품목분류를 비롯한 주요 신고 사항을 점검받고 관세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 기업에는 통관 단계에서 수입물품 검사를 축소하거나 생략하는 혜택이 제공된다.

관세청은 성실신고 확인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돼 기업이 세액을 정정하면 보정기간 내 보정한 것으로 인정해 가산세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도는 2027년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과 의견수렴을 거쳐 2028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김성은 기자 |

##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화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 물품의 원산지 관리가 강화된다. 앞으로 MAS 물품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려면 '국내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쇼핑몰 내 MAS 물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 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안을 8월 10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계약업체가 물품의 원산지를 자율적으로 '대한민국'으로 입력하고, 이후 허위 등록 등이 확인되면 조달청이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허위 등록 물품을 일일이 검증하기 어려워 관리의 한계가 있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원산지: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려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국내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의무로 제출해야 한다.

MAS 계약업체는 관련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2026년 12월 1일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도 시행일까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품목은 '조립국(가공국): 대한민국'으로 변경된다. 다만, MAS 물품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김다솔 기자 |

# 자동차 수출, 7월 역대 최대 62억 4,000만달러···친환경차가 견인

2026년 7월 자동차 수출액이 62억 4,000만달러로 역대 7월 실적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부는 8월 13일 이 같은 내용의 '7월 자동차산업 동향'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7월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7.0% 증가한 62억 4,000만달러로, 역대 7월 수출실적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치였던 2023년 59억달러, 2025년 58억 3,000만달러를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수출 증가를 이끈 것은 친환경차였다. 친환경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5.5% 증가한 25억 9,000만달러였으며, 이 중 전기·수소차는 31.9% 늘어난 9억 4,000만달러, 하이브리드차는 22.2% 늘어난 16억 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내연기관차 수출액은 3.1% 줄어든 36억 5,000만달러에 그쳤다.

● 2026년 7월 자동차산업 수출액 ●

(단위: 100만달러, %)

| 구분 | 2025.7. | 2026.6. | 2026.7. | 2025.7. 대비 증감률 | 2026.6. 대비 증감률 | 2025.1.~7. | 2026.1.~7. | 2025.1.~7. 대비 증감률 |
|---|---|---|---|---|---|---|---|---|
| 자동차 | 5,830 | 6,706 | **6,238** | 7.0 | △7.0 | 42,179 | **42,162** | 0.0 |
| 친환경차 | 2,063 | 2,904 | **2,590** | 25.5 | △10.8 | 14,454 | **17,942** | 24.1 |
| 자동차부품 | 1,909 | 1,743 | **1,952** | 2.3 | 12.0 | 12,611 | **11,979** | △5.0 |

출처: 산업통상부

지역별로는 주력시장인 북미·유럽연합(EU)이 실적을 뒷받침했다. 북미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0% 늘어난 32억 5,00만달러, EU는 23.5% 증가한 8억 8,000만달러였다. 산업부는 주요 업체의 하계휴가 시점이 지난해 7월에서 올해 8월로 이동하면서 조업일수가 늘어나고, 친환경차·SUV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높은 점을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 김다솔 기자 |

# 반도체 강세에 7월 수출물가 전년 대비 49.1% 상승···교역조건도 개선

7월 수출물가가 전월보다 1.0% 오른 반면, 수입물가는 1.0% 내렸다. 한국은행이 8월 14일 발표한 '2026년 7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에 따르면, 원화 기준 수출물가지수는 컴퓨터·전자·광학기기와 석탄·석유제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0% 상승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49.1% 오른 것으로 1998년 3월(57.1%) 이후 28년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품목별로는 D램과 컴퓨터 기억장치 가격이 전월보다 각각 6.6%, 17.6% 상승했다. 경유는

11.2%, 나프타는 6.2% 올랐다.

수입물가지수는 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가 내리며 전월보다 1.0% 하락했지만, 전년 동월보다는 18.7% 상승했다. 원·달러 평균 환율은 6월 1,527.30원에서 7월 1,497.43원으로 2.0% 하락했고 두바이유 월평균 가격은 6월 배럴당 79.45달러에서 7월 76.75달러로 3.4% 내렸다. 한국은행은 프로판가스(△25.2%), 알루미늄정련품(△8.4%) 등 석탄·석유제품과 1차금속제품 하락이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7% 상승했다. 수출물량 증가까지 반영한 소득교역조건지수는 49.7% 올랐다. 한국은행 물가통계팀은 수출품목 가격이 상승하고 물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며 교역조건이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 김성은 기자 |

**2026년 7월 수출물가지수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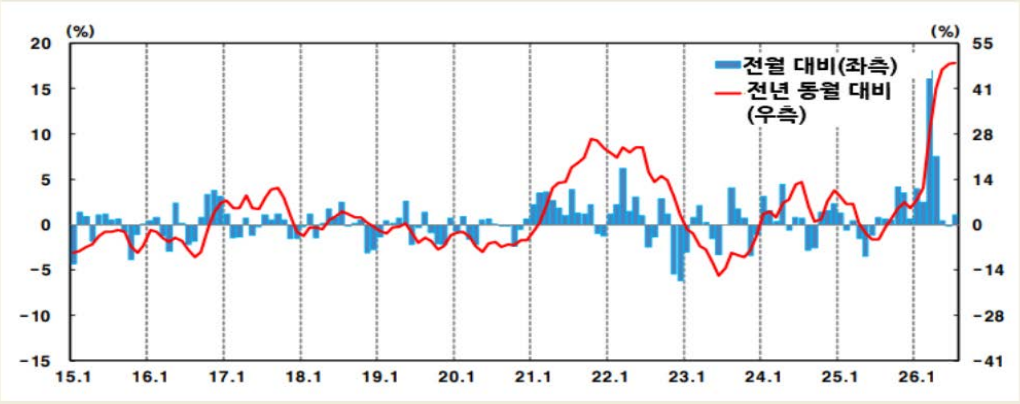


**2026년 7월 수입물가지수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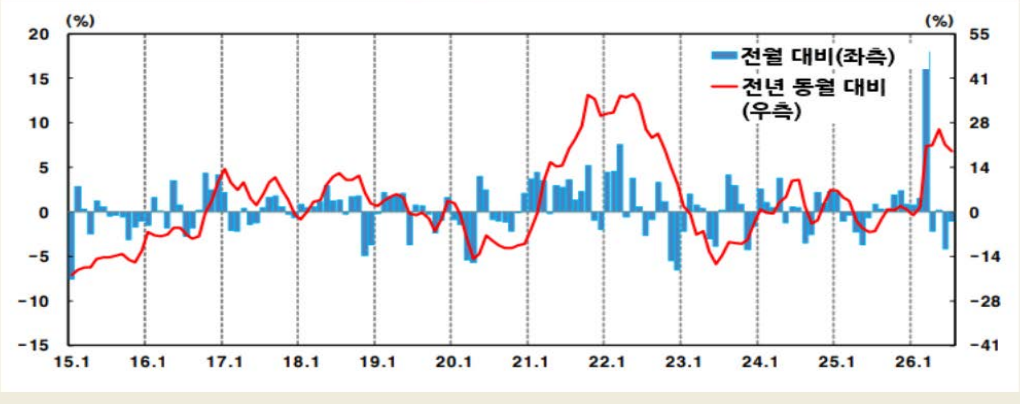


※ 주간 관세무역정보 '위클리뉴스' 코너에서는 관세무역 관련 주요 뉴스를 요약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기사 전문 및 더 자세하고 다양한 관세무역 뉴스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 **관세무역동향**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입 침해품 대응, 법원 밖의 선택지

#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제도, 언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박 주 현** | 법무법인(유) 율촌
대한민국·미국 변호사

## I. 들어가며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1987년 출범한 이래 2025년 7월까지 접수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은 421건으로 집계된다.[1] 38년간 연평균 11건 남짓이다. 유형별로는 지식재산권 침해가 66%, 원산지 표시 위반이 18.1%, 수출입질서 저해가 15.7%, 품질 등 거짓·과장표시가 0.2%이고, 지식재산권 침해 중에서는 상표권과 특허권 침해가 80.2%에 이른다.

1) 무역위원회 출범 이후 누적 집계 기준

같은 기간 국내에서 다툰 특허·상표 분쟁의 규모를 생각하면 작은 숫자다. 제도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다. 권리자 측이 이 절차를 애초에 선택지에 넣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더 사실에 가깝다. 침해품 수입에 대응할 때 법원과 세관을 먼저 떠올리고, 무역위원회를 반덤핑 기관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불공정무역조사법')은 무역위원회에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나 원산지 거짓표시 물품의 수출입을 조사해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026년 7월 23일 개최된 제475차 무역위원회에서는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덤핑조사 최종판정 1건과 함께 자동차용 배터리팩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5건이 심의·의결됐다. 이와 같이 제도는 실제로 운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수입 침해품으로 피해를 입은 권리자가 이 절차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기존 구제수단과 무엇이 다른지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 II. 제도의 구조

### 1. 조사대상 행위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 제1항은 조사대상이 되는 불공정무역행위를 유형별로 열거하고 있다. 실무상 의미가 있는 것은 네 가지다.

**첫째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의 수출입 행위다.**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은 물론 저작권, 영업비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지리적 표시까지 포함된다. 포섭 범위가 넓다는 점이 중요하다. 수출과 수입뿐 아니라 국내 판매, 해외에서 국내로의 공급, 수출을 목적으로 한 국내 제조 행위까지 대상이 된다. 통관 단계를 이미 지나 유통 중인 물품을 발견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둘째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표시한 물품,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한 물품,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물품의 수출입 행위가 해당한다.

**셋째는 품질·내용·제조방법·용도·수량 등의 거짓·과장 표시다.**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부풀려 표시한 물품의 수출입 행위가 해당한다.

**넷째는 수출입질서 저해 행위다.** 수출입계약 이행과 관련해 계약내용과 현저히 다른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분쟁을 발생시켜 대한민국의 대외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무역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이나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著作隣接權)·출판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이나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권 또는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물품 등(이하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또는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수입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나.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등
   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등
   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
3. 품질·내용·제조방법·용도·수량 등(이하 "품질등"이라 한다)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4. 수출입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등의 수출입 또는 분쟁의 발생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대외신용을 손상시켜 해당 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수입에 지장을 주는 행위

무역위원회 고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유형별로 조사신청서 서식을 두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는 권리 종류별로 별지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원산지·품질 등 표시 위반은 별지 제1-4호, 수출입질서 저해는 별지 제1-5호 서식이다. 어느 서식으로 접수하는지에 따라 요구되는 소명자료의 구성이 달라지므로, 사안을 어떤 유형으로 구성할 것인지가 첫 판단이 된다.

## 2. 신청의 문턱: 신청인, 기간, 비용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경우 신청인 적격이 넓다. 무역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뿐 아니라 불공정무역행위 사실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정보와 증거를 제시하는 자는 누구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2] 반덤핑 조사가 국내 산업의 상당 부분을 대표하는 생산자 집단을 사실상 전제로 하는 것과 대비된다. 업계 공동 대응을 조직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신청수수료도 없다.

반면 기간 제한은 명확하다.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조사신청서 서식 자체가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사실을 기재하도록 구성돼 있다. 실무상 가장 놓치기 쉬운 요건이다.

2)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안내(ktc.go.kr)' 참조

## 3. 절차와 소요기간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2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 조사 개시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판정해야 하며, 2개월씩 두 차례 연장 신청이 가능해 최장 10개월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이뤄지고, 기술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서는 당사자에게 별도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다. 특허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이 단계가 사실상 심리의 중심이 된다. 신청인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응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 4. 제재수단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되면 과징금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시정조치는 해당 물품의 수출·수입·판매·제조행위의 중지, 반입배제 또는 폐기처분, 정정광고, 법 위반사실의 공표 등이 포함된다.

먼저, 과징금은 위반 유형에 따라 상한이 구분된다. 지식재산권 침해, 품질 등 거짓·과장표시, 수출입질서 저해는 조사 개시 결정일 직전 3년간 거래금액의 100분의 30이 상한이다. 거래금액은 판매하거나 수출한 물품은 매출가액으로, 그렇지 않은 물품은 매입금액이나 생산원가로 잡는다. 거래 실적이 없거나 행위자가 거래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거래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이 상한이 된다(「불공정무역조사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제2항). 원산지 표시 위반은 3억원 이하로 따로 정해져 있다. 조사 개시 결정일 전 5년간의 수출입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불공정무역조사법」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거래 규모가 큰 사업자일수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편이 유리해지는 구조이므로, 신청인으로서는 거래 규모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둘 실익이 있다.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법정형은 사건 유형에 따라 갈린다.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 이를 위반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 등 그 밖의 유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불공정무역조사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원산지 표시 위반은 한 단계 앞서 있다. 해당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행위 자체가 시정조치 명령을 거치지 않고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불공정무역조사법」 제40조 제1항 제1호). 행정절차의 결론이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행위 자체가 처음부터 위법행위로 규정돼 있는 구조로 피신청인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 III. 법원 절차 및 세관 제도와의 비교

### 1. 침해금지 가처분과의 비교

가처분은 통상 담보 제공이 요구되고, 본안에서 결론이 뒤집힐 경우의 위험도 신청인이 부담한다. 침해 사실의 소명책임 역시 온전히 신청인에게 있다.

그러나, 무역위원회 절차에는 담보 제공 문제가 없다. 신청 이후의 사실확인은 상당 부분 위원회가 직권으로 수행하므로 신청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지만, 손해배상은 받을 수 없다. 결국, 침해행위의 중지와 재발 차단이 목적이라면 무역위원회 절차가, 금전적 전보가 목적이라면 법원 절차가 적합하다.

### 2. 세관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와의 비교

세관에 권리를 신고해 두고 침해 의심 물품의 통관을 보류시키는 방식은 신속하다. 그러나 개별 수입 건 단위로 작동한다. 동일한 수입자가 신고 내용이나 반입 경로를 조정해 반복 수입하는 경우 대응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

무역위원회의 시정조치는 행위자 단위로 내려진다. 특정 사업자의 해당 물품 수입·판매 행위 자체를 중지시키므로 반복 수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두 제도의 성격은 이렇게 차이난다.

### 3. 병행 활용

절차가 배타적이지는 않다. 세관 신고로 당장의 통관을 막고, 무역위원회 조사로 행위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확보하며, 손해가 큰 사안에서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합이 가능하다. 무역위원회의 침해 판정은 이후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여지도 있다.

## IV. 실무상 고려사항

### 1. 신청서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권리의 존재와 침해 사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수입 사실의 입증이다. 신청 단계에서 대상 물품이 실제로 수입됐다는 점, 그리고 그 수입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조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된다.

이 부분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크다. 품목분류, 수입신고 내역의 해석, 유사물품의 수입 동향 파악은 권리자가 단독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침해 물품의 HS Code를 특정하고 해당 세번의 수입 실적을 분석하는 작업이 신청서의 설득력을 좌우한다.

## 2. 2년의 기산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이 이뤄지는 사안에서는 어느 시점을 기산점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된다. 오래된 침해 사실을 중심으로 신청을 구성하면 기간 요건에서 다퉈질 소지가 있다. 확인 가능한 최근 수입 건을 축으로 신청 범위를 짜고, 그 이전 이력은 반복성과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배치하는 편이 안전하다.

## 3. 잠정조치의 활용

최종판정까지 최장 10개월이 소요된다. 그 기간 침해 물품이 계속 유통되는 상황을 감수할 것인지가 초기 판단 사항이 된다. 잠정조치를 함께 구할 것인지는 신청 준비 단계부터 검토돼야 한다.

## 4. 원산지·품질표시 위반과의 결합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수입물품은 원산지 표시 위반을 동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두 유형 모두 「불공정무역조사법」상 조사대상이므로 하나의 사건에서 함께 주장할 수 있다.

최근의 집행 환경도 고려할 만하다. 관세청은 2026년 무역안보 전담 조직을 정식 직제화하고 국산둔갑 우회수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026년 5월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무역안보 침해 범죄 규모는 이미 전년도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원산지 표시 위반 요소가 결합된 사안이라면 무역위원회 조사와 관세청 조사를 병행하는 접근이 가능하다.

## 5.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과 포상금

비용 부담을 이유로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다.

「불공정무역조사법」 제25조의2에 근거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를 최대 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관은 한국무역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다. 신청은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최종판정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3)]

포상금 제도도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조사를 신청한 자에게 과징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3)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피해구제 제소 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kbiz.or.kr)' 참조

## V. 최근 집행 동향

2025년 3월 무역위원회 직제가 개정돼 조직이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됐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직접 관련된 변화는 두 가지다.

첫째, 불공정무역조사과가 특허권 침해 등 조사·판정 업무에 집중하도록 기능이 정리됐다. 둘째, 판정지원과가 신설돼 침해 물품 수출입 중지 등 판정 이후의 시정조치와 행정소송 대응을 전담하게 됐다. 국제법·회계·특허 분야 민간 전문가 채용도 함께 추진됐다.

판정 단계뿐 아니라 집행 단계에 인력을 배치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시정조치가 내려지고도 실효적으로 관철되지 않는다면 신청 유인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 VI. 맺으며

수입 침해품 문제를 안고 있는 기업이 무역위원회 절차를 검토하지 않는 이유는 대체로 제도를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무역위원회 절차는 신청인 적격이 넓고 수수료가 없으며, 중소기업이라면 대리인 선임비용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게다가 조사 부담의 상당 부분은 위원회가 진다. 대신 2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다.

조사 신청 여부를 판단하려면 침해 판단과 통관 실무를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 권리 분석만으로도, 수입 데이터 분석만으로도 신청서가 완성되지 않는다. 이 절차의 활용도가 낮았던 이유 중 일부는 여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 질의 응답 사례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품목분류 분야]**

### 폴리에스테르 소재의 휴대용 접이식 장바구니의 HS Code를 알려주세요.

문의한 물품이 '트렁크·슈트 케이스 ··· <중략> ··· 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에 해당한다면 제4202호에 분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세분류로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의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에 해당한다면 제4202.32-2000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는 제4202호의 '기타'의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에 해당한다면 제4202.92-2000호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 품목번호 | | | 품명 |
|---|---|---|---|
| 4202 | | |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 |
| | 32 |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
| | | 2000 |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
| | 92 |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
| | | 2000 |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

**[감면 분야]**

## 중국 절에서 한국의 절로 불상을 기증받는 경우 관세 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불상이 사원 등 종교단체의 의식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외국으로 기증되는 물품이라면 「관세법」 제91조에 따라 관세·부가세 감면이 가능하며, 감면신청 시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해당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세감면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교회, 사원 등 종교단체의 의식(儀式)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40조(종교·자선·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제신청)** ① 법 제91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91조 제1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기증목적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환급 분야]**

## 개별환급을 위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가공한 후 이를 수출물품 제조업체에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할 때 국내거래 공급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공급물품에 포함돼 있는 기초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과 해당 물품의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기납증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에 따라 신청 및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2항에서 "관계서류는 동 고시 제48조의 국내거래 인정서류 및 제49조의 양도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기납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② 제1항에서 정한 관계서류는 제48조의 국내거래 인정서류 및 제49조의 양도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제9장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기납증 발급신청하는 경우
   가. 별지 제46호 서식의 소요량계산서
   나. 기납증 발급신청한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확인서류
   다. 별표 2의2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환급금 계산 내역표(조견표)
   라. 별표 2의3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의3 서식의 자재명세서(BOM)
   마. 소요량 산정에 관련된 증빙서류(제50조에 따른 서류제출인 경우에 한한다)

■ **제48조(기납증 발급을 위한 국내거래 인정서류)** 제46조에서 정한 물품에 대한 국내거래 인정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내국신용장
2. 구매확인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한 것)
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 또는 용역수수료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로부터 받고 물품은 해외구매자가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는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

■ **제49조(국내거래물품의 양도일자)** 제48조 및 제55조에서 정한 서류로 거래된 물품의 양도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
1. 신용장으로 거래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상의 인수일
2. 신용장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자
   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물품공급일,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의 물품공급일 또는 물품의 공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거래명세서)상의 공급일
   나.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른 거래일
   다. 법인분할 등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등기일
   라. 제48조 제3호 중 수출계약 등의 사유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의 공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운송장)상의 공급일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에 기재된 인수일 또는 물품공급일과 실제공급일이 다를 때에는 실제공급일을 양도일로 하며, 이 경우 물품수령증과 세금계산서 여백에 실제공급일과 확인자를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기납증 발급신청을 위해서는 앞선 규정의 관계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제48조의 국내거래 인정서류에 대한 세관장 인정 여부 등에 관해서는 환급 가능 여부 및 심사 등을 결정하는 관할지 세관 환급부서에 확인하기 바랍니다.

# 「관세법」상 구매수수료 관련 판례 분석

김 민 주 | 부산세관

## 1. 들어가며

수입거래에서는 구매자가 해외 공급자를 직접 물색해 거래하기도 하지만, 해외 소재 관계회사나 전문업체를 통해 공급자를 찾고 물품의 생산·검수·운송 등을 지원받는 경우도 많다. 이 과정에서 비용은 구매수수료, 소싱서비스 비용, 검수비, 조달수수료 등 다양한 명칭으로 지급된다.

「관세법」에서 말하는 '구매수수료'란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해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해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러한 구매수수료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일반적인 수수료나 중개료와 달리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는다.

이는 구매수수료가 물품 자체의 가격이나 판매자의 수익이 아니라, '구매자를 위해 제공된 대리용역의 대가'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구매수수료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지급된 비용의 명칭이 '구매수수료'라고 해서 모두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거래관계에서 해당 업체가 실제로 구매자의 대리인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판매자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과세가격 포함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구매수수료 인정 여부에 관한 주요 판례를 살펴보고, 어떤 경우에 관세평가상의 구매수수료로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 2. 관련 법령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의2(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구매수수료(이하 '구매수수료'라 한다)는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

②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비용 중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한다.

③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매수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구매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3(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 등)** 영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은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공급자 물색, 구매 관련 사항 전달, 샘플수집, 물품검사, 보험·운송·보관 및 인도 등을 알선하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대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2. 구매대리인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권리가 있는 경우
3. 구매대리인이 해당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수수료 및 중개료)** 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수료와 중개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수수료는 해당 수입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중개료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위하여 거래알선 및 중개역할의 대가로 판매자 및 구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 3. 판례 분석

구매수수료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단순히 계약서나 비용의 명칭만으로 구매수수료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용역 제공자가 실제로 구매자를 대리했는지, 물품에 대한 소유권과 위험은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공급자 선정과 가격결정 등 거래의 주요 사항을 누가 결정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다음에서는 구매수수료를 인정한 판례(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와 부정한 판례(과세가격에 포함된 사례)로 나눠서 살펴본다.

### 가. 구매수수료를 인정한 판례: 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두9508 판결[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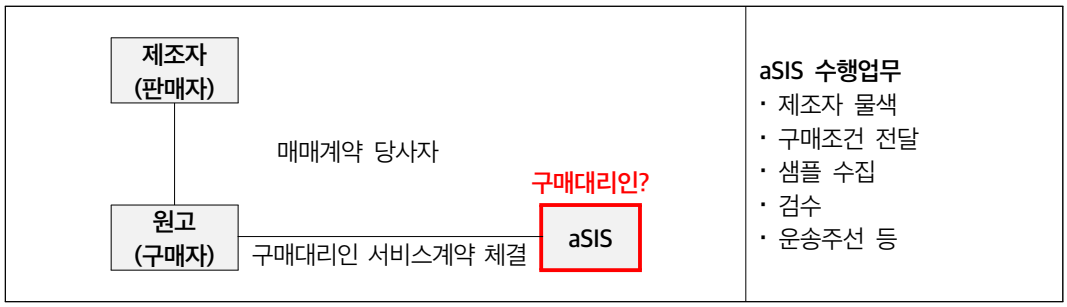


이 사건에서 아디다스코리아는 해외 법인인 adiadas-Salomon International Sourcing Ltd.(이하 'aSIS'라 한다)를 통해 수입의류 등을 구매하고, aSIS에게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했다. 해당 사건에서 문제 된 사안은, aSIS가 실질적인 판매자인지, 아니면 원고(아디다스코리아)의 구매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원고와 aSIS가 체결한 구매대리서비스계약에 따르면, aSIS는 수입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가격결정과 운송 등 관련 제반 업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원고가 가지도록 돼 있었다.

실제 aSIS가 수행한 업무를 살펴보더라도, 제조자를 물색하고 원고의 요구사항을 제조자(수출 판매자)에게 전달하며, 샘플을 수집하거나 물품검수·확인 및 운송 관련 사항을 주선하는 것이었다. aSIS가 제조자에게 제품을 주문할 때는 원고의 주문번호와 고객번호를 명시했고, 제조자가 발행한 송장에서도 aSIS가 원고의 대리인으로 표시돼 있었다.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aSIS는 원고의 요청을 제조자에게 전달하고 양 당사자 사이에서 하자처리 과정을 협의했을 뿐, 하자에 관한 책임은 제조자가 부담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수입물품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제조자이고, aSIS는 원고의 구매대리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aSIS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봤다.

---

1) 서울행정법원 2007.5.17. 선고 2006구합17369판결(피고 승)→서울고등법원 2008.5.23. 선고 2007누15898판결(원고 승)→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두9508판결(최종 원고 승)

한편 aSIS가 원고로부터 대금을 받기 전에 제조자에게 물품대급을 지급하고, 수입신고필증과 재무제표에 aSIS가 공급자 또는 매입처로 기재돼 있었던 사정도 존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aSIS가 원고의 구매대리인이라는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해당 판결의 핵심은 aSIS가 자신의 책임으로 수입물품을 구매해 원고에게 다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원고와 제조자 사이에서 원고의 구매를 보조하는 역할만을 수행했다는 점이다. 즉,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구매자의 지시에 따라 공급자 물색·검수 운송주선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구매대리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 서울고등법원 2008.5.23. 선고 2007누15898 판결 일부 발췌 ●

aSIS가 이 사건 제품들의 판매자인 경우는 aSIS가 제조자로부터 이 사건 제품들을 구매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다시 원고에게 이를 판매하는 경우뿐이므로, 과연 aSIS가 제조자로부터 이 사건 제품들을 구매하여 원고에게 이를 판매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aSIS가 제조자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하였는지 여부는 제조자로부터 이사건 제품들의 소유권이 aSIS에게 이전되어 그로 인한 위험(상품의 가격 등락에 따른 손익, 멸실·훼손 등의 위험)을 aSIS가 부담하였는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가 aSIS에게 이 사건 제품들을 주문하면, aSIS는 제조자에게 원고의 주문번호, 고객번호, aSIS.O.B 운송조건 등을 명시하여 주문 내용을 제조자에게 전달하여 주고, 제조자는 그 요구대로 aSIS.O.B 운송조건으로 제품을 선적한 사실, ② 선하증권상 송하인은 제조자, 수하인은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제품들의 운송에 대한 위험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에 가입한 사실, ④ 원고가 이 사건 제품들의 운송료를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제조자 사이에 이 사건 제품들에 관하여 aSIS.O.B 운송조건으로 한 매매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제품들의 소유권은 제조자로부터 원고에게로 직접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① 원고와 aSIS 사이의 구매대리서비스 계약상 aSIS는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기로 하고, 구매자 선정, 가격결정, 운송 기타 관련 업무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원고가 가지기로 약정한 점, ② aSIS는 위 구매대리서비스 계약에 정해진 대로 원고에게 제조자를 물색해 주고 원고의 요구사항을 제조자에게 알려주며, 샘플을 수집, 물품을 검수 확인하고 물품의 운송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주선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③ aSIS가 제조자에게 제품을 주문할 때에도 원고의 주문번호와 고객번호를 명시하였는데 이는 aSIS가 원고의 대리인 자격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제조자는 aSIS를 원고의 대리인으로 표시한 송장을 발행한 점, ⑤ 원고가 aSIS를 통하여 수입한 제품에 대한 하자 처리에 있어, aSIS는 원고의 하자처리 요청을 제조자에게 전달하고 원고와 제조자 사이에서 하자처리 과정을 협의하는 역할만을 하고 하자에 대한 책임은 제조자가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품들에 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제조자라고 할 것이다.**

## 나. 구매수수료를 부정한 판례

1) 용역제공자를 실질적인 판매자로 본 사례: 대법원 2014.9.26. 선고 2014두7572판결[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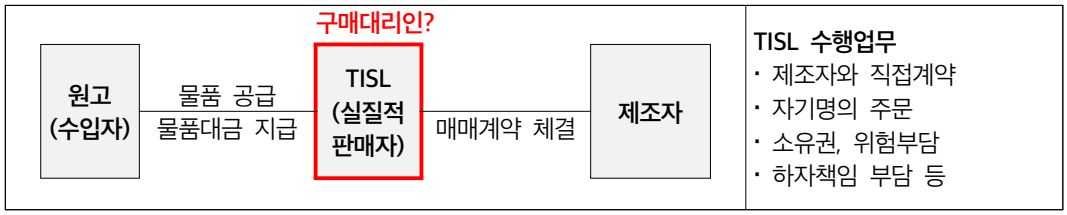


원고는 Tesco International Sourcing Ltd(이하 'TISL'이라 한다)와 조달계약을 체결했다가, 이후 계약의 명칭과 일부 내용을 구매대리계약으로 변경했다.

원고가 필요한 물품의 사양, 구매수량 및 희망가격 등을 TISL에 통보하면, TISL은 제조자 후보를 찾고 품목별 제안가격을 원고에게 전달했다. 원고가 제조자를 선정하면 TISL은 해당 제조자에게 구매주문서를 보내 물품을 주문했다. 물품은 제조자로부터 원고에게로 직접 운송됐으나, TISL이 제조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그 금액에 5%를 더해 원고에게 청구했다.

계약의 외형만 본다면 TISL이 원고의 구매를 대리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거래관계를 다르게 판단했다.

TISL과 제조자 사이의 표준구매계약서에는 TISL이 구매자로 기재돼 있었고, 물품의 소유권과 위험도 주문조건에 따라 TISL에 이전되도록 돼 있었다. 원고와 제조자 사이에는 별도의 계약서가 없었으며, TISL과 제조자 사이의 계약에서도 TISL이 원고의 구매대리인이라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았다.

또한 TISL은 자신의 명의로 물품을 주문하고, 자신을 수입자로 하는 상업송장을 발급받았으며, 자신의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해 제조자에게 물품대급을 지급했다. TISL은 제조자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지급한 뒤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했으므로, 물품대금 선지급에 따른 위험도 부담했다.

TISL은 제조자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을 매입채무로 계상하고 클레임 충당금도 설정했다. 법원은 이를 TISL이 물품의 결함이나 수량부족 등에 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데 대비한 것이라고 봤다. 원고 역시 수입신고서상 해외거래처에 TISL을 기재하고, 해당 거래를 용역거래가 아닌 재화거래로 회계처리했다.

---

2) 서울행정법원 2013.4.11. 선고 2012구합4210 판결(피고 승)→서울고등법원 2014.4.18. 선고 2013누13169 판결(피고 승)→대법원 2014.9.26. 선고 2014두7572 판결(최종 피고 승)

이에 법원은 TISL이 원고의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수입물품의 실질적인 수출자 또는 판매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물품대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구매수수료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과세가격에 모두 가산해야 한다고 봤다.

이 판결의 핵심은, 계약서의 제목보다 '누가 자신의 명의와 위험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판매하였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계약서에 '구매대리계약'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용역 제공자가 물품의 소유권과 위험을 부담하고 자신의 명의로 대금을 지급하며 하자책임까지 부담한다면 실질적인 판매자로 판단될 수 있다.

● 서울행정법원 2013.4.11. 선고 2012구합4210 판결 일부 발췌 ●

이 사건 수수료는「관세법」제30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하는 것이지 같은 항 제1호 단서에서 말하는 구매수수료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구매수수료와 관련하여 "구매대리인이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한다"(해설 2.1 제9항)고, "대리인이 수입물품 결제를 위하여 자신의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구매대리인이 단순히 구매대리인으로서 행동하여 합의된 약정수수료를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물품의 소유권과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구매대리 약정에 관한 모든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수출회사 또는 소위 독립대리인은 구매대리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예해 17.1 제10,11항)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구매자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TISL은 제조자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원고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이 사건 계약서 3.10항), 이에 따라 TISL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신용장거래에 의하여 물품대금을 제조자에게 지급하는 점, TISL은 재무제표에 제조자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을 매입채무로 계상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공급한 물품의 하자에 대비한 클레임 충당금을 계상하고 있는 점(TISL이 구매대리인에 불과하다면 제조자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을 부채로 계상할 필요가 없고, 물품의 하자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TISL은 구매자(원고)가 아닌 자신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활동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2) 용역제공자가 거래와 가격을 실질적으로 통제한 사례: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34059판결[3)]

원고는 미국 소재 모회사(본사)로부터 소싱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지급했다. 미국 본사가 수행한 업무에는 상품기획, 해외공급자 파악, 해외공급자와의 거래조건 협상, 제품원가 결정 및 재료조달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미국 본사는 단순히 원고의 지시에 따라 공급자를 찾아주거나 거래를

3) 서울행정법원 2015.5.8. 선고 2014구합63145 판결(피고 승)→서울고등법원 2016.1.22. 선고 2015누46132 판결(피고 승)→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34059 판결(최종 피고 승)

보조한 것에 그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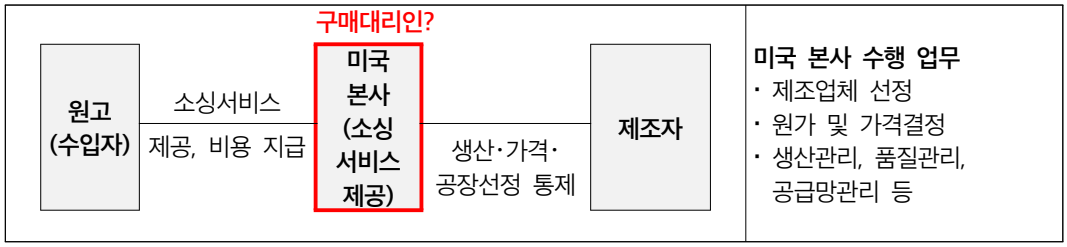


미국 본사는 제조사를 최종적으로 승인할 권한과 특정 시즌에 어느 공장에 주문할지를 결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현지 계열사의 영토 밖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원가와 현지 제품가격을 결정할 수 있었으며, 생산의 전 과정을 감독하고 제품의 품질검사도 수행했다. 해당 지역에 발송하고 남은 재고에 대한 권리 역시 해외공급자로부터 인계받도록 돼 있었다.

소싱서비스 비용도 개별 구매물량에 따라 산정된 것이 아니라, 미국 본사에서 발생한 원가의 일정 부분을 각 자회사에 배분하는 방법으로 산정됐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미국 본사가 수입물품의 해외공급자 선정과 거래가격 등 거래의 핵심사항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 본사를 원고의 구매대리인으로 볼 수 없고, 미국 본사에 지급된 소싱서비스 비용도 구매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해당 판결의 핵심은, 공급자를 물색하거나 품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구매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용역 제공자가 제조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제품의 원가와 가격을 결정하는 등 거래 자체를 지배했다면, 단순 구매대리인으로 보기 어렵다.

● 서울행정법원 2015.5.8. 선고 2014구합63145 판결 일부 발췌 ●

이 사건 소싱서비스 비용이 구매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소싱서비스 부분은 적법하다.

미국 본사의 소싱 활동은 상품기획, 해외 공급자의 파악, 해외 공급자와의 유리한 조건 협상과 제품 원가 결정, 재료 소싱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미국 본사의 소싱 활동은 컬럼비아 그룹의 제품을 효율적으로 납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2010년 이전 가격보고서). 미국 본사는 원고와 이 사건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소싱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고 있다. 원고는 미국 본사가 대한민국에 설립한 자회사로서 미국 본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고, 이와 같은 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자회사와도 일률적으로 체결되며, 컬럼비아 그룹 전체 차원에서 소싱 활동이 이루어지는 만큼 미국 본사가 원고로부터 받은 소싱서비스 비용을 단순히 컬럼비아 제품의 구매대리인으로서 받는 구매수수료라고 할 수는 없다. 더욱이 원고가 미국 본사에 지급하는 소싱서비스 비용을 보면, 미국 본사에 발생한 원가의 일정 부분을 구매 물량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데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소싱서비스 비용이 단순한 구매수수료라고 보이지 않는다.

## 4. 시사점

첫째, 구매수수료에 대한 판단기준은 갈수록 계약의 형식보다 거래의 실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구매대리계약의 존재나 계약서상 명칭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존재했을 수 있으나, 최근 판례는 계약서의 표현에 구속되지 않고 거래 전반의 실질적인 법률관계와 경제적인 실질을 중심으로 구매대리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계약의 명칭을 '구매대리계약'으로 작성하거나 지급비용을 '구매수수료'라고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과세가격 제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둘째, 구매수수료 인정 여부는 용역의 내용뿐만 아니라 거래에 대한 지배력의 귀속 또한 핵심적인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공급자를 물색하고, 검수·품질관리 등을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구매대리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거래상대방의 선정, 가격결정, 생산관리 등 거래의 핵심사항을 누가 실질적으로 결정했는지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해질수록 단순한 업무의 종류보다 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겠다는 판례의 방향을 보여준다.

셋째, 해외 소싱거래를 운영하는 기업은 계약체결 단계부터 구매대리 구조를 명확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구매대리인이 공급자를 연결하고 구매를 지원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것과, 실질적인 판매자 또는 공급망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의 작성뿐 아니라 실제 거래 과정에서도 구매자가 가격과 거래조건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행사했고, 구매대리인은 그 범위 내에서 구매자를 위한 용역을 수행한다는 점이 일관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

## 5. 맺음말

구매수수료는 「관세법」상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비용이지만, 그 적용 여부는 지급된 비용의 명칭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일관되게 거래의 실질을 중심으로 구매대리인의 지위를 판단해 왔으며, 구매대리인이 물품의 소유권과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구매자를 위해 독립적인 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구매수수료를 인정했다.

반대로 용역제공자가 실질적인 판매자의 지위에서 거래를 수행하거나, 거래의 핵심사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하는 경우에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는 구매수수료 제도에서 거래형식을 이용한 과세가격의 축소를 방지하면서도, 진정한 구매대리활동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려는 「관세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구매수수료 해당 여부는, 거래 전반의 실질적인 법률관계와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 앞으로 해외조달방식이 다양해지고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해질수록, 거래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거래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려는 판례의 기준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 피부질환 등에 쓰이는 광선 치료 기기의 품목분류

김 진 용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3과

## Ⅰ. 개요

최근 광선 치료(Light Therapy)는 피부질환 치료 및 신생아 황달 치료를 넘어 탈모 개선, 암 치료(광역학 치료), 안티에이징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도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광선 치료는 건선, 아토피, 백반증 등의 치료를 위해 단파장 자외선 B(UVB)를 이용한 국소 및 전신 광선 치료가 널리 사용되고 있고, 탈모 및 두피 관리에 저출력 레이저(LLLT, Low Level Laser Therapy) 및 발광다이오드(LED, Light Emitting Diode) 복합 광선 요법이 주목받고 있다. 광선 치료 요법은 기존 수술이나 방사선 요법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에 따르면, 물리치료란 열이나 얼음, 공기, 광선, 전기, 전자기파, 초음파, 기계적인 힘, 중력 등을 이용해 통증을 완화하거나 조직의 치유를 촉진하고, 신체의 움직임을 향상시키는 등 특정한 목적의 치료 효과를 얻고자 하는 시술을 말하며, 광선 치료는 물리치료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위키백과사전에 따르면, 광선 치료(광치료 또는 고휘도 광선 치료라고도 함)는 계절성 정서 장애(SAD, Seasonal Affective Disorder), 일주기 리듬 수면-각성 장애, 암, 신생아 황달, 피부 상처 감염 등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직사광선이나 조절된 파장의 인공 조명에 노출시키는 치료법이다. 신경피부염, 건선, 여드름, 습진과 같은 피부질환을 자외선으로 치료하는 것은 자외선 치료라고 한다.

● 다양한 광선 치료 기기 ●



최근 가정이나 피부미용실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는 광선 치료 기기가 출시되고 있으며,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는 이러한 광선 치료 기기의 품목분류가 무엇인지 쟁점이 된 적이 있다.

WCO HS위원회의 품목분류 결정사항은 관세청 고시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 2인 'HS 품목분류의견서'로 국내 수용하는데, 이 의견서는 국내 품목분류 결정 시 꼭 참고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 수출입신고 시 유사한 물품이 HS 품목분류의견서에 등재돼 있으면 필수로 검토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광선 치료 기기의 품목분류에 관한 HS위원회 결정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 Ⅱ. 쟁점 사례

## 1. 광선 치료 기기

### 1) 물품 설명

가정 또는 피부미용실 등에서 사용하기 위해 치료용 편광광을 전달하는 광학장치와 함께 할로겐 광원이 장착돼 있음. 빛의 파장범위는 350~3,400nm임. 이 장치는 세포 대사를 개선하고, 특정 세포 반응을 유발하는 빛의 효과를 바탕으로 통증 완화, 노화 방지, 피부질환 치료, 계절성 정서 장애(SAD) 또는 소아 질환 등 광범위한 분야에 사용되도록 고안됐음.

## 2. 쟁점 세번

1) 제8543호: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2) 제9018호: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 3. 의견

### 1) 제8543호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16부에서 제외하므로 제90류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예방용·치료용·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해설함.

쟁점물품은 가정 등에서 일반적인 건강상 편의를 위해 제작된 물품으로 병원에서 의사들이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 아님. 효능에 대한 홍보 관점에서 제시된 쟁점물품의 의료적 용도는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는 인정되지 않은 물품임. 따라서 쟁점물품은 제9018호의 물품으로 볼 수 없음.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므로 쟁점물품은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전기기기로서 해당 해설서 내용과 부합함.

따라서 쟁점물품은 '그 밖의 전기기기'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8543호에 분류함.

2) 제9018호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16부에서 제외하므로 제90류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예방용·치료용·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해설함.

쟁점물품은 집 등에서 일반인 또는 기술자가 사용하지만, 품목분류는 사용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에 따라 분류돼야 함. 쟁점물품은 치료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의료기기로서 제9018호에 해당함.

따라서 쟁점물품은 의료기기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018호에 분류함.

3) 논의 결과

WCO 논의 시 일부 국가에서는 쟁점물품의 기능이 중요하며, 피부질환 치료, 계절성 정서장애 치료 기능을 갖춘 쟁점물품은 단순한 전기기기가 아니며, 쟁점물품은 ISO 13485(의료기기의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했으므로 제9018호의 의료기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논의 결과, 콜라겐 생성과 미세순환을 통해 상처 치료와 고통 감소 등과 같은 치료효과를 가지는 편광에 의한 쟁점물품은 일반적 건강 효과가 있지만, 의료기기로 볼 수는 없다고 했으며, 다수 국가에서 일반인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쟁점물품은 제9018호의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고 제8543호의 '그 밖의 전기기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해당 결정은 다음과 같이 HS 품목분류의견서로 국내수용됐다.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 2(HS 품목분류의견서)

| | |
|---|---|
| 8543.70 | 8. 광선 치료 기기<br>광선 치료 기기는 가정이나 미용·헬스케어 시설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다. 이 기기는 광학 장치와 결합된 할로겐 광원을 통해 치료용 편광 광선을 방사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기기는 광선의 효과를 통해 세포 대사 개선과 특정 생물학적 및 세포 반응을 유도하는 원리에 기반해서 상처치유, 통증 완화, 노화 방지, 피부질환 치료, 계절성 정서장애(SAD) 또는 소아 질환 치료 등 광범위한 용도에 사용되도록 설계되었다.<br><br>「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 |

## Ⅲ. 사례 해설

지금까지 특정 광선 치료 기기의 WCO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살펴봤다. 그렇다면 수출입화주, 신고인 등 이해관계자가 수출입 통관 시 참고를 위해 이번 품목분류 결정의 세부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쟁점물품 관련 WCO의 세부 검토사항과 함께 국내외의 다양한 광선 치료 또는 물리치료기기의 유사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WCO에서는 우선 검토 규정인 제16부 주 제1호 타목을 검토했다. 제16부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해 제9018호에 우선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제9018호의 의료기기에 해당되면 제8543호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

제9018호 해설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료기기의 개념이 설명돼 있다.

**■ 제9018호 해설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예방용·치료용·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또한 해부용·검시용·절개용 등의 기기나 일정한 조건하에서 치과용 기기[아래 (II) 참조]도 포함한다 ··· <후략>

This heading covers a very wide range of instruments and appliances which, in the vast majority

of cases, are **used only in professional practice** (e.g., by doctors, surgeons, dentists, veterinary surgeons, midwives), either to make a diagnosis, to prevent or treat an illness or to operate, etc. Instruments and appliances for anatomical or autoptic work, dissection, etc., are also included, as are, under certain conditions, instruments and appliances for dental laboratories [see Part (II) below].

제9018호 해설서 국문에서는 "그 직업상 사용하는"으로 번역했으나 영문판에는 "are used only in professional practice"로 돼 있다. 원문상 의미는 "그 직업에만 사용되는"으로 한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원문에 따르면, 제9018호의 물품은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전문적으로만(only in professional) 사용하는 물품이다. 즉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물품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제9018호의 물품에는 가정에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들은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WCO에서 논의 시 다른 국가들의 의견은 원문상 의미를 가지고 한정적으로 판단해 쟁점물품이 가정과 미용·헬스케어 시설에서 사용되므로 제9018호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WCO 논의 시 한 국가가 쟁점물품이 ISO 13485(의료기기의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했으므로 제9018호의 의료기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ISO 13485는 의료기기 산업을 위한 국제 품질경영시스템(QMS, Quality Management System) 표준으로서 설계부터 제조, 유통,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의료기기의 안정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국내 우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및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규격이다.

통상적으로 품목분류 결정 시 국제인증 또는 국내인증 사항을 참고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의료기기 관련 국내외 인증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품목분류를 제9018호의 의료기기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각종 제품의 인증 사항은 품목분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용상의 안전, 품질관리 등을 위한 기준일 뿐이므로 인증사항을 참고로 하는 것이다. 물론 인증사항의 내용 중 수치, 용량 등은 품목분류 시 참고할 수도 있다. 이는 반도체 인증 등 전기·전자제품의 인증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두 번째로는 유사한 물품에 대한 각국의 결정사례를 추가로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의 우리나라 사례 1번 물품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례로 물리치료의 한 방법인 전자기파를 활용해, 의료 목적으로 제조돼 직업상 사용하는 의료기기가 아닌 개인 건강관리용으로 가정에서 일반인이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제8543호에 결정됐다.

## □ 유사물품의 국내 분류 사례 1

| | |
|---|---|
|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936 |
| **시행일자** | 2020년 1월 16일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공개 여부** | 공개 |
| **결정 세번** | 제8543.70-2090호 |
| **경합 세번** | 제8543.70-2090호, 제9018.90-9080호, 제9019.10-2000호 |
| **연도** | 2019년 제7회 |
| **품명** | 비타그램 저주파 마사지기, WGT-1235 |
| **물품 설명** | ㅇ 개요<br>- 가정에서 신체(어깨, 허리 등)에 부착해 미세한 전류(5~100Hz)를 통해 근육을 수축·이완시키는 원리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기기[전기근육자극(EMS) 기반 저주파 자극기]<br>ㅇ 구성요소<br>- 저주파 기기(본체), 흡착 컵 4개, 점착 패드 4개, 전극 연결코드, USB 충전 케이블 사용설명서 ※ 표시사항: 저주파 마사지기<br>ㅇ 작용 원리<br>- 저주파를 신체 내부로 흘려보냄으로써 근육을 자극하는 원리]전기근육자극(EMS, Electro Muscular Stimulation) 원리]<br>- 근력 운동 시 뇌신경은 근육으로 전기신호를 보내 근섬유를 자극하게 되고 자극을 받은 근섬유와 근세포는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마사지(약한 강도)나 운동 효과(강한 강도)를 볼 수 있는데, 기계를 이용해 뇌의 전기신호와 유사한 전류를 만들어 사용하는 원리<br><br><물품 이미지> <사용 방법> |
| **결정 사유** | 본건 물품이 제9018호 또는 제9019호에 해당돼 제8543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br><br>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electro medical apparatus)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예방용·치료용·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고 설명하고 있음.<br><br>**본건 물품은 의료 목적으로 제조돼 직업상 사용하는 의료기기가 아니라, 개인 건강관리용으로 가정에서 일반인이 사용하는 공산품이므로 근육 마사지를 통해 근육통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더라도, 제9018호에 분류될 수 없음.**<br><br>※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건 물품에 대해, "의료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제조·사용하는 제품(미용기기)은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음.<br>따라서 본건 물품은 다른 류의 호(제9018호, 제9019호 등)에 분류되지 않는 전기기기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8543.70-2090호에 분류함. |

우리나라 사례 2번 물품은 광선 치료 요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개인이 가정에서 쉽게 사용하도록 제작된 가정용 기기이므로 제8543호에 분류됐다.

## □ 유사물품의 국내 분류 사례 2

| | |
|---|---|
|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668 |
| **시행일자** | 2021년 6월 29일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 세번** | 제8543.70-2020호 |
| **품명** | Electrical Beauty Appliance ; BRAUN IPL PL5237 ; 65×60×185mm, 272g |
| **물품 설명** | ㅇ 주요 특성<br>- IPL 광원*을 피부에 조사해 신체 각 부위 모발의 성장을 억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개인용 피부미용 기기<br>※ IPL(Intense Pulsed Light): 레이저와 달리 515~1,100nm 사이의 넓은 파장대를 가진 복합 광원. 비응집성 광원<br>- 본체의 헤드 부분을 피부에 접촉해 IPL광원을 짧은 시간에 고강도로 방출하면, 모낭 기질에 있는 멜라닌 색소가 빛 에너지를 흡수해 온도가 상승하고 모발 성장이 중단<br>- 본체, 어댑터, 헤드(기본·정밀 각 1개), 수동 면도기, 파우치로 구성되며, 헤드 부분에 '센소 어댑트' 피부톤 감지 센서가 장착돼 있어, 피부 톤에 따라 광 출력 세기를 자동 조절<br><br> |
|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함<br>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특히 다른 류에 분류하는 주요한 전기기기는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라고 설명함.<br>**본 물품은 IPL 광원을 피부에 조사하여 모발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사용하는 기기로서 사용설명서 등에 의하면 개인이 가정에서 쉽게 사용하도록 제작된 가정용 기기임. 또한, 커패시터(Capacitor)를 통해 광 출력을 조절하고 특수 플래시 램프를 통해 전기적으로 IPL 광원을 조사하는 기기이며, 제85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해 제외되지 않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임.**<br>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 기능을 가진 그 밖의 가정형 미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2020호에 분류함. |

해외 분류 사례 1번 물품은 여드름, 피지 등의 광선 치료 기기로, 이미지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크기, 제원인데도 불구하고 제8543호로 분류했다는 것이 특이하다.

## □ 유사물품의 해외 분류 사례 1

| | |
|---|---|
| **기준년도** | 2014년 |
| **참조번호** | PLPL-WIT-2014-00956 폴란드 |
| **시행일자** | 2014년 7월 25일 |
| **결정 세번** | 제8543.70.9099호 |
| **물품 설명** | A device called “Isolaz 2” for an active treatment of acne by the use of the process of selective photothermolysis of vacuum, intensive pulsating light source (IPL). Allows **photodynamic therapy(광역동치료),** resulting in unblocking pores of the skin, **eradicating the bacteria that cause acne inflammation(여드름 염증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를 박멸하고)** and reduce sebum secretion. The camera has an integrated structure, is placed on wheels to facilitate movement, equipped with meters. Al. screen control panel and a portable head with a flexible pipe treatment facilities - operated manually by the operator during the procedure. |
| **분류 사유** | Classification of goods was based on rules 1 and 6 of the Gener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Combined Nomenclature, and is consistent with the wording of 8543 of the Common Customs Tariff (CCT) and CCT subheading 8543 70, covering the remaining electrical equipment performing individual function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
| **이미지** |  |

해외 분류 사례 2번 물품은 신청인은 피부과에서 사용되는 제품이라고 주장했으나, 가정에서 사용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8534호로 결정됐다.

## □ 유사물품의 해외 분류 사례 2

| | |
|---|---|
| **기준년도** | 2017년 |
| **참조번호** | N287274 미국 |
| **시행일자** | 2017년 6월 22일 |
| **결정 세번** | **제8543.70.9960호** |
| **시행기관** | New York |
| **회신** |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the **light therapy** device from China |
| **물품 설명** | N287274<br>June 22, 2017<br>CLA-2-85:OT:RR:NC:N4:120<br>CATEGORY: Classification<br>TARIFF NO.: 8543.70.9960<br><br>RE: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the light therapy device(광선 치료기기)** from China<br>Dear Ms. Trotta:<br><br>In your letter dated June 13, 2017 you requested a tariff classification ruling.<br><br>The merchandise under consideration is identified as the light emitting diode (LED) **Anti-Aging Light Therapy Lip Device(항노화 광선치료 입술기기)**, Item #LP1FQ, which you describe as a handheld LED device that is **used in dermatology(피부과에서 사용된다)** for the treatment of fine lines and wrinkles. The device is equipped with a mouthpiece and a collection of LEDs that deliver light in the red, amber and infrared spectrums directly onto the wearer's lips. This therapy is stated to stimulate the production of collagen and elastin within the skin.<br><br>The applicable subheading for the LED Anti-Aging **Light Therapy** Lip Device, Item #LP1FQ will be 8543.70.9960,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 which provides for Electrical machines and apparatu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parts thereof: Other machines and apparatus: Other: Other: Other: Other.". The general rate of duty will be 2.6%. |

이와 같이 WCO HS위원회의 광선 치료 기기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살펴봤다. 제9018호의 의료기기는 의사 등이 직업적으로 사용하는 전문적인 기기에 한정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 Ⅳ. 시사점

이번 호에서 광선 치료 기기에 대한 WCO 품목분류 결정사례를 살펴봤다. 또한 유사한 물리치료기기에 대한 우리나라와 각국의 분류사례를 봤다.

광선 치료 기기 외에도 각종 물리치료 방식인 열, 공기, 전기, 전자기파, 초음파 등을 이용해 통증을 완화하거나 조직의 치유를 촉진하는 기기들도 의사 등의 직업적으로만 사용하는지에 따라 제9018호 분류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번 품목분류 사례는 확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제9018호 해설서에서 “only in professional” 국문 번역이 한정적으로 돼 있지 않아 분류 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추후 해설서 개정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에서 언급한 광선 치료 기기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사례를 참고해 무역업체, 신고인, 관세청 등에서는 유사한 제품의 기능, 용도, 구조, 사용자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수출입신고 시 적정한 세번으로 분류하기를 희망한다.

# 일본, 보세구역을 신산업·지역경제 인프라로 활용

## 미술품 전시·지속가능항공유 혼합에 쓰여···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

일본 관세국은 해외에서 반입된 미술품을 정식 수입통관 전 상태로 전시할 수 있도록 행사장을 일정 기간 보세전시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6년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일본 요코하마의 파시피코 요코하마 홀에서 국제 아트페어 'Tokyo Gendai(東京現代) 2026'이 개최될 예정이다.

Tokyo Gendai는 외국화물의 보관과 관세채권 확보를 중심으로 운영돼 온 보세제도가 국제 문화행사와 미술품 거래에 활용되는 사례로 꼽힌다.

## 미술품 거래를 지원하는 보세전시장

외국에서 일본으로 들어온 물품은 수입허가를 받기 전까지 '외국화물'로 분류된다. 일본 세관은 '외국화물'을 관리하기 위해 ▲지정보세지역, ▲보세장치장,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종합보세지역 등 다섯 종류의 보세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 일본의 보세구역 ●

| 구분 | 지정·허가권자 | 외국화물 장치기간 | 주요 기능 | 활용 사례 |
|---|---|---|---|---|
| 지정보세지역 | 재무대신 지정 | 1개월 | 외국화물의 하역·운반 및 일시 장치 | - |
| 보세장치장 | 세관장 허가 | 2년[1] | 외국화물의 하역·운반 및 장기 장치 | 하네다공항 보세 미술품 경매 |
| 보세공장 | 세관장 허가 | 2년[1] | 외국화물을 원료로 한 가공·제조·혼합 | 수입 니트 SAF와 항공유의 혼합 |
| 보세전시장 | 세관장 허가 | 지정하는 기간 | 외국화물의 전시·사용 | Tokyo Gendai 2026 |
| 종합보세지역 | 세관장 허가 | 2년[1] | 하역·운반·장치·가공·제조·전시 등 복합 기능 | 주부국제공항·Aichi Sky Expo |

자료: 일본 재무성 관세국 '보세제도의 개요(Customs Answer 9203)'를 바탕으로 정리

Tokyo Gendai에 참가하는 해외 갤러리는 미술품을 외국화물 상태로 행사장에 반입해 전시할 수 있다. 행사 후 일본 내 구매자에게 판매·인도할 작품은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소비세 등 필요한 세금을 납부하며, 판매되지 않았거나 해외 구매자에게 인도할 작품은 수입하지 않고 국외로 반출한다. 이는 판매 여부가 행사기간 중 결정되는 미술품 거래의 특성과 맞아떨어진다. 모든 작품을 수입한 뒤 재수출하는 대신, 작품의 최종 행선지에 따라 수입과 국외 반출 절차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원칙은 3개월이나, 장기 장치 승인 후에는 2년(연장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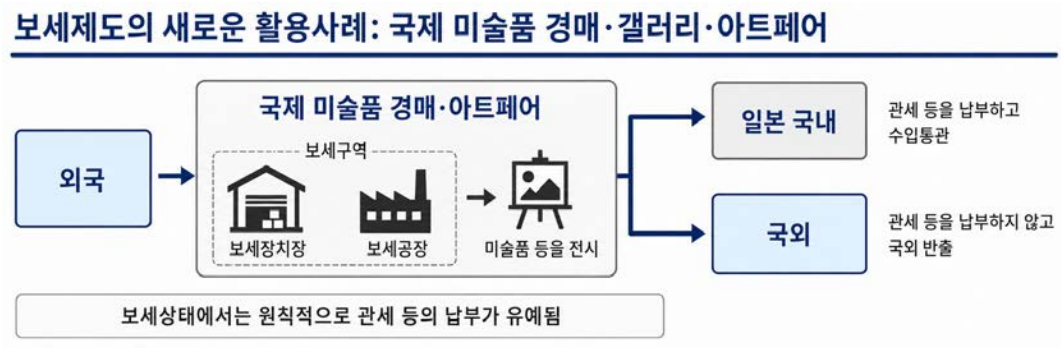


자료: 일본 나고야세관 감시부 '보세제도의 개요'(2025.10.), 번역·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일본에서 보세구역을 활용한 미술품 거래는 Tokyo Gendai 이전에도 이뤄졌다. 2021년 10월 하네다 공항에서는 일본 최초로 보세장치장을 활용한 미술품 경매가 열려 총 약 26억 4,800만엔의 낙찰액을 기록했다. 이듬해 3월 같은 장소에서 열린 국제 경매에서는 미국의 팝아트 작가 앤디 워홀(Andy Warhol)의 '실버 리즈[페러스 타입, Silver Liz (Ferus Type)]'이 23억엔에 낙찰돼 당시 일본 국내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다.

## 홍콩의 자유항과 다른 일본의 방식

홍콩은 아시아의 주요 미술품 거래 중심지로 성장해 왔다. 일반적인 수출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미술품에는 부가가치세나 판매세도 없다. 홍콩정부의 투자유치기관 인베스트HK(InvestHK)는 이러한 무관세 환경과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 주요 경매회사와 갤러리의 집적을 홍콩 미술시장의 입지조건으로 제시한다.

일본은 홍콩과 같은 자유항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지만, 국제 아트페어 행사장을 일정 기간 보세전시장으로 허가해 해외 미술품의 반입과 전시를 지원한다. Tokyo Gendai는 요코하마시의 문화예술정책과도 연계돼 있다. 요코하마시는 2026년도 사업계획에서 Tokyo Gendai와 지역 내 창조거점의 연계를 강화하고, 방문객의 시내 이동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보세제도가 국제행사의 통관 기반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도시의 문화예술정책과 연결하는 것이다.

## 일본 관세국, 보세제도의 활용 확대 추진

일본 재무성 관세국은 올해 6월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트페어 등 새로운 보세제도 활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항공유(SAF, Sustainable Aviation Fuel)가 새로운 활용사례로 확인된다. 항공 분야의 탈탄소화에 따라 각국이 SAF 혼합의무제와 도입목표를 마련하면서 새로운 항공연료의 수요와 공급망이 형성되고 있다. 일본

은 수입한 니트 SAF(Neat SAF)[2]를 자국 내의 정유시설에서 기존 항공유와 혼합하는 과정에 보세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여러 보세기능을 한 지역에 결합한 사례로 주부국제공항을 들 수 있다. 2005년 아이치현에 개항한 주부국제공항은 일본 공항 가운데 유일하게 종합보세지역으로 허가돼 외국화물의 하역·보관뿐 아니라 가공·제조·전시 등의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다. 2025년 12월에는 아이치현 국제전시장 'Aichi Sky Expo'에서 'World Robot Summit 2025 AICHI'가 열려 외국 전시물품을 대상으로 보세전시가 이뤄졌다.

## 한국, 전자상거래에서 AI·로봇 클러스터까지

한국에서도 보세구역은 새로운 산업과 물류수요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 Global Distribution Center)다. GDC는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을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보관하고, 각국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분류·재포장한 뒤 해외로 배송하는 물류센터다. 이를 통해 국내 공항과 항만은 단순한 환적지를 넘어 보관·분류·포장·배송을 수행하는 전자상거래 물류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관세청은 반입물품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해 왔다.

최근에는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건설단계부터 종합보세구역을 활용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관세청은 2026년 8월 전북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AI 데이터센터 건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입주기업은 해외에서 들여오는 기계·설비와 원재료의 관세 등을 유보한 상태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제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다. 구역 내 입주업체 사이의 보세운송 절차와 종합보세사업장의 특허 갱신 부담도 줄어든다.

보세제도의 활용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새로운 산업과 물류 수요를 기존 제도 안에 수용하려는 방향은 한국과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9월에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활용, 민관 협력 강화, 신속한 물류·여객 흐름과 엄격한 국경관리의 병행 등 2026년 6월 일본 재무성 관세국이 발표한 '세관 중장기구상 2030'을 소개한다. 일본 세관이 2030년을 향해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를 살펴본다. **| 강보람 기자 |**

2)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원료로 만든 순도 100%의 지속가능항공유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신간 도서안내

## 2026 개정판
# 관세법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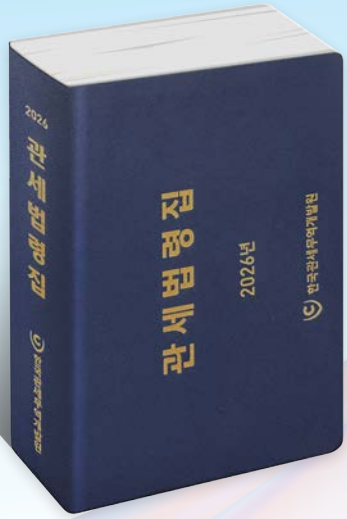


- 관세 행정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수록 법령 개편
  「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등 신규 수록
- 2026년 4월 1일까지 최신 개정 법령 반영
  최신 법조문과 관련 고시·판례 통합 업데이트
- 법령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3단 구성

## 2026 HS품목별
# 수출입통관편람

### 관세 · 무역 실무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기준




- 2026년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및 FTA 연차세율 반영
  - 22개 FTA(CEPA, SECA 포함), WTO 협정 등 반영
  - 한·UAE CEPA, 한·에콰도르 SECA 신규 수록
  - 한·EU, 한·영국 FTA 상·하반기 세율 반영
-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및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사항 수록
- 통합공고 및 기타세율 규정, 내국세법 등 주요 개정사항 반영

## 도서 구매 문의 안내

**구매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smartstore.naver.com/kctdi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더욱 다양한 도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TEL (02)3416-5112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